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9. 16(금) 09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16호

나. 제 출 자 : 정순기의원, 고영찬의원, 장규권의원, 정재동의원,
엄셋별의원, 고성미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
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
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
사항” 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
(안 제3조제2항제2호 → 안 제3조제2항제3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재경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복지건설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.
-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” 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
(안 제3조제2항제2호 → 안 제3조제2항제3호)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'08.03.06., 2014.12.30., 2022.1.12.>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)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상임위원회를 두며,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4.12.30.>

1. 의회운영위원회 : 6명 이내<개정 2014.12.30.>
2. 행정재경위원회 : 5명 이내 <개정 '08.03.06., 2014.12.30.>
3. 복지건설위원회 : 5명 이내 <개정 '08.03.06, 2012.07.17., 2014.12.30.>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

다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
라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 하에 관한 사항<신설 2022.1.12.>

2. 행정재경위원회<개정 2008.03.06.>

가.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9.1.16.>

나.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<삭제 2014.12.30., 개정 2022.8.15.>

다.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0.10.11, 2013.1.18, 2019.12.31., 2022.8.15.>

라.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'08.03.06, 2010.10.11, 2013.1.18, 2019.1.16., 2022.8.15.>

마.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.18>

바.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.18>

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<신설 2019.1.16.>

3. 복지건설위원회 <개정 '08.03.06, 2018.1.15>

가.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'08.03.06, 2010.10.11, 2019.1.16., 2019.12.31.>

나.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0.10.11, 2019.12.31., 2022.8.15.>

다.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0.10.11, 2013.10.31, 2019.12.31.>

라. 삭제 <2019.1.16.>

마. 삭제 <2019.12.31.>

바.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1.17., 개정 2022.8.15.>

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<개정 2014.12.30.>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“상임위원”이

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개정 2014.12.30.>

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다만,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보임되었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4.12.30.>

제7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.<개정 2014.12.30.>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22.1.12.>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, 활동내용,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, 활동기간,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, 2022.1.12.>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4.12.30., 2022.1.12., 2022.1.12.>

④ 예산안, 결산, 예비비 지출,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<신설 2022.1.12.>

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신설 2022.1.12.>

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1.12.>

⑦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.

[중전 제4항에서 이동]<개정 2014.12.30., 2022.1.12.>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)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10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

를 감독한다.

제12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4.12.30.>

제13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둔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,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12.30.>